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연구팀장 김선우[6576] 팀원 유슬기[6593]/ E-mail : kmarbrv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10865호

시행일자 2024. 12. 2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발령번호 의료자원정책과-13073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,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 개정사항

- 한국보건의료연구원·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동의서(임상진료) 양식 변경
- 검체검사 위탁 범위 확대, 혁신의료기술 실시 보고 사항 명확화 등

○ 시행일자

- 2024.12.26.

#첨부

- 1) (241226)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본.hwp.
- 2) (241226)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본.pdf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